
Policy and Law Report _Vol.12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3.07.~ 2022.03.13) -

March 14,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상황, 각 부문별 동향 및 대응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 등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출통제) 정부는 지난 2/28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결정에 이어,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 ② (기업) 對러 수출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 및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설명회를 지속 실시하고, 對러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작업 기 착수 및 신속 진행 ③ (공급망)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중인 가운데, 주력산업 핵심소재(네온·크세논 등)를 포함한 주요 품목수급도 아직까지는 특이사항 없음 ④ (금융) 미·EU 등 주요국 금융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 만전 ⑤ (중소기업) 3/2 가동을 개시한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4일까지 대금결제·물류·수출·원자재 수입 등 부문 중심으로 총 42건의 애로 접수 ⑥ (곡물) 글로벌 곡물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産 식용 옥수수 (Non-GMO 17만톤)·사료용 옥수수(26만톤)의 국내반입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 ⑦ (해양·수산) 對러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명태원물 기준)의 가격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아직까지 수급에 큰 차질은 없으며, 재고량도 충분한 상황 ⑧ (해외건설)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 對러 제재가 기존사업 진행 및 신규사업 수주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이 있음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실제 발생하는 문제·애로사례 중심으로 접근하여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사태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상황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시 조치계획도 보완해 나갈 예정임	2022-03-06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 수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분야 혁신기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칭)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번 전략에는 10대 디지털 분야 혁신기술 육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으로 국가 필수전략기술 중 ①인공지능, ②5세대·6세대 이동통신, ③양자, ④사이버보안, ⑤지능형 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분야와 ⑥우주, ⑦첨단로봇 등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빠르게 산업·기술 고도화가 가능한 분야가 포함되며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집중육성이 필요한 ⑧가상융합(XR) 기반기술, ⑨고성능 컴퓨팅, ⑩블록체인 기술 분야도 추가로 포함됨 아울러, 대책에서는 세계 패권경쟁 시대를 맞아 기술주도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①주력분야에 대한 압도적인 기술력 확보 ②핵심기술에 대한 신속한 격차 극복·국산화 등이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선도형 연구개발을 위한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 후속연구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연구몰입환경 조성 등 디지털 연구개발 체계 혁신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임	2022-03-08																																																							
산업통상 자원부	• 유망 신산업(5개분야) 산업기술인력 전망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분야 5개 유망신산업*을 대상으로 ‘유망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전망’을 실시하였음 * 미래형자동차, IoT가전,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 산업기술인력: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 < 5개 신산업분야 현원 및 부족률 > (단위 : 명, %) <table><tr><th rowspan="2">신산업분야</th><th colspan="2">2018년</th><th colspan="2">2020년</th><th colspan="2">2030년</th></tr><tr><th>현원</th><th>부족률</th><th>현원</th><th>부족률</th><th>현원</th><th>부족률</th></tr><tr><td>미래형자동차</td><td>50,533</td><td>3.5</td><td>72,326</td><td>3.5</td><td>107,551</td><td>-</td></tr><tr><td>IoT가전</td><td>31,102</td><td>2.8</td><td>68,831</td><td>3.2</td><td>108,965</td><td>-</td></tr><tr><td>디지털헬스케어</td><td>38,050</td><td>7.1</td><td>49,253</td><td>6.6</td><td>78,279</td><td>-</td></tr><tr><td>스마트·친환경선박</td><td>35,549</td><td>2.6</td><td>44,737</td><td>3.8</td><td>74,162</td><td>-</td></tr><tr><td>항공·드론</td><td>4,823</td><td>4.3</td><td>7,340</td><td>8.9</td><td>11,128</td><td>-</td></tr><tr><td>합계</td><td>160,057</td><td>4.0</td><td>242,487</td><td>4.3%</td><td>380,085</td><td>-</td></tr></table> * 2030년 현원은 전망 값이며 부족률은 산정하지 않음	신산업분야	2018년		2020년		2030년		현원	부족률	현원	부족률	현원	부족률	미래형자동차	50,533	3.5	72,326	3.5	107,551	-	IoT가전	31,102	2.8	68,831	3.2	108,965	-	디지털헬스케어	38,050	7.1	49,253	6.6	78,279	-	스마트·친환경선박	35,549	2.6	44,737	3.8	74,162	-	항공·드론	4,823	4.3	7,340	8.9	11,128	-	합계	160,057	4.0	242,487	4.3%	380,085	-	2022-03-07
신산업분야	2018년		2020년		2030년																																																				
	현원	부족률	현원	부족률	현원	부족률																																																			
미래형자동차	50,533	3.5	72,326	3.5	107,551	-																																																			
IoT가전	31,102	2.8	68,831	3.2	108,965	-																																																			
디지털헬스케어	38,050	7.1	49,253	6.6	78,279	-																																																			
스마트·친환경선박	35,549	2.6	44,737	3.8	74,162	-																																																			
항공·드론	4,823	4.3	7,340	8.9	11,128	-																																																			
합계	160,057	4.0	242,487	4.3%	380,085	-																																																			

부처	내용	일시
	세부 내용으로는 ① (미래형자동차) - (현원) '18년 50,533명 → '20년 72,326명으로 증가하여, '18년 대비 '20년도 현원은 약 1.4배 증가 * 미래형자동차는 '16년 6월 말 기준 최초 조사, '18년 말 2차, '20년 말 3차 조사됨 - (부족인원) '18년 1,827명(부족률 3.5%) → '20년 2,644명(3.5%)으로 증가하나, 현원 대비 부족률은 동일 수준 유지 * ('20년 말 기준 학력별 부족률) 고졸 3.3%, 전문대졸 4.5%, 대졸 3.6%, 석·박사 1.3% - (전망) 향후 10년간 약 3.5만명 증가(연평균증가율 4.0%)하여 '30년도 현원은 107,551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② (IoT가전) - (현원) '18년 31,102명 → '20년 68,831명으로 증가하여, '18년 대비 '20년도 현원은 약 2.2배 증가 * IoT가전은 '18년 6월 말 기준 최초 조사, '20년 말 기준 재조사됨 - (부족인원) '18년 880명(부족률 2.8%) → '20년 2,268명(3.2%)으로 증가하여, 현원 대비 부족률도 0.4%p 상승 * ('20년 말 기준 학력별 부족률) 고졸 0.9%, 전문대졸 2.8%, 대졸 5.5%, 석·박사 3.4% - (전망) 향후 10년간 약 4만명 증가(연평균증가율 4.7%)하여 '30년도 현원은 108,965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③ (디지털헬스케어) - (현원) '18년 38,050명 → '20년 49,253명으로 증가하여, '18년 대비 '20년도 현원은 약 1.3배 증가 * 디지털헬스케어는 '18년 말 기준 최초 조사, '20년 말 기준 재조사됨 - (부족인원) '18년 2,900명(부족률 7.1%) → '20년 3,507명(6.6%)으로 증가하나, 현원 대비 부족률은 0.5%p 하락 * ('20년 말 기준 학력별 부족률) 고졸 0.9%, 전문대졸 3.2%, 대졸 9.5%, 석·박사 5.5% - (전망) 향후 10년간 약 2.9만명 증가(연평균증가율 4.7%)하여 '30년도 현원은 78,27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④ (스마트·친환경선박) - (현원) '18년 35,549명 → '20년 44,737명으로 증가하여, '18년 대비 '20년도 현원은 약 1.3배 증가 * 스마트·친환경선박은 '18년 말 기준 최초 조사, '20년 말 기준 재조사됨 - (부족인원) '18년 932명(2.6%) → '20년 1,759명(3.8%)으로 증가하여, 현원 대비 부족률도 1.2%p 상승 * ('20년 말 기준 학력별 부족률) 고졸 2.0%, 전문대졸 4.1%, 대졸 5.4%, 석·박사 3.7%	

부처	내용	일시
	- (전망) 향후 10년간 약 2.9만명 증가(연평균증가율 5.2%)하여 '30년도 현원은 74,16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⑤ (항공·드론) - (현원) '18년 4,823명 → '20년 7,340명으로 증가하여, '18년 대비 '20년도 현원은 약 1.5배 증가 * 항공·드론은 '18년 말 기준으로 최초 조사, '20년 말 기준 UAM 신규 추가하여 재조사 - (부족인원) '18년 215명(4.3%) → '20년 714명(8.9%)으로 증가하여, 현원대비 부족률도 4.6%p 상승 * ('20년 말 기준 학력별 부족률) 고졸 13.8%, 전문대졸 7.5%, 대졸 7.8%, 석·박사 3.9% - (전망) 향후 10년간 약 4천명 증가(연평균증가율 4.2%)하여, '30년도 현원은 11,12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금융위원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 신설 - (물적분할) 모(母)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로 만들고, 신설된 자(子)회사의 주식 전부(100%)를 소유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분할 제도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일부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다양한 의견 제기 - (개선방안) 이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구하는 한편, 회사와 주주간에 자율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 - (원칙 신설) 기업은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경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 강구 - (기재 사항)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 설명 - (기대효과) 상장기업이 물적분할 등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 스스로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 ②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 -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 강화	2022-03-07

부처	내용	일시
	③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 (현행) 상장기업이 단순히 상법과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만을 나열하는 등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음 - (개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됨 ④ 감사위원회 - (현행)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음 - (개선)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훈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 ⑤ 기타 정비사항 - (주총 이전 주주 대상 정보제공 시점) 주총 4주전 통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 - (사외이사 활동 평가) 실제 평가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원칙 준수 인정 - (외부감사인 선임/의사소통) 관련 회의·협의 횟수는 대면·화상회의만 인정 - (이사회 정보 보완)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연령 및 성비(性比) 항목 추가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1.1. 시행 예정)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축가상자산: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2022-03-08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1.1. 시행 예정)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3-08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3.8. 시행) 측량 및 IT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요금미터에 대한 수리(修理)·사용 검정이나 전문검정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택시요금미터 수리·사용 검정과 전문검정기관 지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정하는 한편,	2022-03-0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륜자동차의 변경사항 등의 신고를 유도하고, 단순 부주의 등으로 신고를 지체한 자와 고의로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사항이나 사용폐지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고 지연기간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정액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일부 지연기간 구간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륜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인 기여금**과 관련하여 감액조건 부과기준, 납부기한 연장사유 등 세부사항 마련 필요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 보급목표 미달성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4)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제3종 저공해자동차 정의 삭제 (안 제1조의2제3호) -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등)를 삭제 ② 법령 제58조의4항에서 위임한 기여금관련 내용 신설 (안 제52조의4, 제52조의5) - (상한 기준) 기여금 상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으로 정의 (안 제52조의4제1항) - (가산금 규정) 「지방세징수법」제30조, 제31조 준용 (안 제52조의4제2항) - (감액 규정) 감액 가능 사유 근거 규정 및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기여금의 합이 각 매출액 중 더 큰 값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부과되도록 규정 신설 (안 제52조의4제3항) - (부과기준 등) 부과방식, 단계적 부과 근거, 납부기한 연장 사유, 실적 초과분 활용 가능 근거 규정 및 별표 신설 (안 제52조의5, 별표12의3) ※ 의견 제시기간 : 3/10(목)~4/19(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로 제출	2022-03-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중 민간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민·관 공동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며, 환지 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변경 중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 (안 제7조제1항) -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 ②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동의 대상 명확화 (안 제7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중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봄 ③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 확대 (안 제14조의2) -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④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규정 (안 제18조의2제1항) -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 중 민간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함 ⑤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절차 규정 (안 제18조의2제2항) - 공공시행자가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2022-03-1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3/11(금)~4/2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로 제출	
금융 위원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그동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연체 이후 개인채무자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서 채권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과 관련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화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의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체 이후 일정 시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 안내 의무화 (안 제6조·제8조·제11조) -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채무자 주택의 경매·채권의 양도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채무자 주택의 경매·채권의 양도를 제한함 ② 연체이자의 부과 한도 제한 (안 제7조) -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보유한 채무 중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③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및 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안 제9조·제10조)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 양도 후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채권 및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지 않도록 함 ④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의무화 (안 제15조) -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소멸시효 중단 필요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하도록 하고, 동 기준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완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022-03-0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⑤ 채권의 추심제한 및 추심착수 전 통지 의무화 (안 제18조·제19조) -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추심개시 예정 사실과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 함 ⑥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 및 추심방법 제한 강화 (안 제20조·제22조) - 채권금융기관 및 그 추심인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⑦ 추심 위탁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사후책임 강화 (안 제29조) -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업무전문성 및 채무자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적법하게 채권 추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⑧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제도화 (안 제39조·제41조) - 연체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사전에 마련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조정안을 제안하도록 함 ⑨ 채권수탁추심업의 이관 (안 제45조) - 기존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이 법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변경하고, 기능이 유사한 채권매입추심업과 동일한 법률에 따른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⑩ 채권매입추심업의 신설 (안 제54조) - 기존의 대부업 중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별도의 등록업인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분리하고, 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와 차별화되는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⑪ 채무조정교섭업의 신설 (안 제67조) -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 교섭업무를 대행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별도의 등록업무로 신설하고, 개인채무자가 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⑫ 업종별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허용범위 정비 (안 제49조·제62조·제70조) - 이 법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 위임직 채권추심인,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다른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 등을 명확히 함 ⑬ 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 의무화 (안 제50조 제63조 제70조) - 기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의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에도 적용하도록 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⑭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차입한도 규제 (안 제64조) -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총 매입대금의 75% 이내로 제한함 ⑮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영업행위 원칙 마련 (안 제71조·제72조·제77조)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수단, 채무조정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채무자를 대리한 의사표시 제한 등 영업행위 원칙 마련 ⑯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 부과 제한 (안 제74조)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총 수수료 부과한도를 10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⑰ 법정손해배상 도입 (안 제91조) -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범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손해액으로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 없이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⑱ 책임이행의 보장 (안 제92조) -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따른 책임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업보증금 예탁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의견 제시기간 : 3/8(화)~3/2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거래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아울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	2022-03-10
기획재정 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100분의 20(3주택 이상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종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제8항 신설)	2022-03-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 「<u>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u>」 OTT(Over The Top) 시장의 확대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 유통 주기의 축소, 등급분류 대상 비디오물의 증가(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2배 증가) 등 영상콘텐츠 산업계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내에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등급분류를 거쳐야 하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축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업계 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도 양립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 신설 등)	2022-03-04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3/18(금)	「해의의회 포커스」 제80호 발간	
	3/18(금)	「헌법과 법제」 제16호 발간 - 행정형벌 규정의 헌법상 쟁점과 법제적 시사점	
국회도서관	3/15(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7호 발간 -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 · 영국 · 일본 입법례	
예산정책처	주중	「NABO Focus」 제42호 발간 -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입법조사처	3/18(금) 14:00	한일관계의 진단과 새로운 관계의 모색 세미나	
	3/15(화) 10:00	「전문가 간담회」 - 제1차 형사사법영역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속 간담회 - 양천수 교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온라인
	3/18(금) 14:00	「전문가 간담회」 - 제4차 차기 정부 교육정책 이슈와 과제 연속간담회 - 이희현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16(수) 13:30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에 의원실 외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25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3/11(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9호 발간	
국회도서관	3/8(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6호 발간 - 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	
	3/10(목)	「현안, 외국에선」 제31호 발간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